

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
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
조례안

(정윤주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

(정윤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3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11월 7일

발의자 : 정윤주, 양순임, 김육영, 정병기,
김경이, 이용진, 소형준, 임태근,
경수현, 강수진, 정기혁, 이호건,
권영애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
나.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다.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
라.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마. 방사능 오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
(안 제7조)

바. 정보공개와 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8조, 제9조)

사. 유해물질 검사를 위한 관계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
규정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, 「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」,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, 「식품위생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보건위생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11. 7. ~ 2023. 11. 13.

서울특별시 성북구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수산물”이란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성북구”라 한다)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.
2. “유해물질”이란 「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) 구청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북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

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6조(안전성 검사 등)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및 「식품위생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)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 또는 성북구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조(정보공개)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성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.

제9조(교육 및 홍보) ① 구청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·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업무협조)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

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